고구려시기 무덤관리에 대한 연구

교수 박사 **리 광 희**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유적과 유물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민족의 재보이며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발전된 문화를 전해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25폐지)

고구려에서는 조상의 무덤을 잘 건설하였을뿐만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사업에 큰 관심을 돌렸다.

광개토왕릉비 등 고구려시기의 기록자료들과 고고학적인 자료들에는 당시 무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시되였다는 사실들이 잘 반영되여있다. 특히 왕을 비롯한 고위급의 봉건통치배들은 전문적으로 무덤을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놓고 많은 인적, 물적재부를 탕진하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조상의 무덤들을 관리하였다.

지난 시기 고구려의 무덤관리에 대하여서는 일정하게 연구가 진행되였다. 도서 《광개토왕릉비》를 비롯하여 여러 고구려력사연구론문들에서 수묘인연호의 징집과 매매금지 규정, 복역방식 등을 론의하였다.

최근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서 수묘인연호와 관련한 법규정내용이 새겨진 집안고구려비가 발견되여 당시의 문화제도를 구체적인 수자로 밝혀내려는 시도가 진행되면서 고구려의 무덤관리를 한단계 높은 수준에서 자세히 연구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

고구려의 무덤관리는 봉건통치배들이 저들의 사치한 생활을 죽어서도 계속 유지하고 가문의 위세를 뽐내려는 반동적인 목적에서 진행된것으로서 수묘인연호에 속한 인민들에 대한 통치배들의 가혹한 고역과 착취를 동반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은 반동적인 수묘인연호제도를 반대하는 여러가지 형식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과정에 통치배들은 무덤의 규모를 줄이는것과 같은 박장풍습에로 넘어가는 기만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고구려시기 무덤관리는 이러한 제한성이 있지만 법규정의 제정과 집행, 신앙과 풍습, 경제력 등을 해명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 론문에서는 고구려시기 무덤관리를 관리법규와 관리로력, 관리자금, 관리항목, 특징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수자를 밝혀내는 방법으로 자세히 론의하려고 한다.

2. 본 론

2. 1. 무덤관리법규

고구려봉건국가에는 건국초기부터 무덤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조상들에 대한 숭배의식과 령혼불멸관념에 기초한 대규모적인 무덤의 건설과 관리는 이미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일이였다.

광개토왕릉비문을 보면 수묘인연호제도가 시조왕시기부터 존재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릉비문의 마지막부분에는 《國崗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敎言 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守墓洗掃—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은 생존시에 말하기를 조왕, 선왕들은 다만 멀고 가까운 곳의 오랜 백성들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도록 하라고 하였다.》라고 되였다.

여기서 조왕(祖王)과 선왕(先王)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수묘인연호제도가 광개토왕의 할아버지대에 처음 생겨난것이 아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왕, 선왕은 시조왕과 부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생각되며 당시의수묘인연호제도는 시조왕대로부터 부왕대까지 련면히 전해져내려왔다는것으로 된다.

종래에 조선(祖先)왕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인 선조왕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지만 좀더 자세히 해석할수도 있다.*

*《광개토왕릉비》사회과학출판사 1966년 227폐지

릉비문에 있는《自上祖先王以來…》라는 표현은《우로는 조선왕이후부터…》로 해석되며 따라서 조선왕은 일반적인 선조 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라는 의미보다도 제일 첫왕즉 시조왕이라는 의미로 인식된다. 이것은 모두루묘지명을 보면 더 잘 알수 있는데《노객의 조선(祖先)은 …북부여에서 추모성왕을 따랐다.》라는 기록에서 북부여에서 추모왕을따른 사람이 주로 4세기중~말에 활동한 모두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니라 고주몽이 활동하던 시대에 산 가문의 시조격으로 인식할수 있게 한다.

광개토왕릉비의 《조왕》이 고구려의 시조왕을 가르킨것이며 당시 집안에 시조왕의 무덤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이미 발표되였다.*

*《고구려시조 동명성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년 191폐지

이것은 광개토왕이 수묘인연호를 징발하는 규정을 시조왕시기 다시말하면 건국초기 부터 있었다고 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고국양왕, 광개토왕시기 무덤관리정형에 대하여 광개토왕릉비문에는 《致使守墓人烟 戶差錯-수묘인연호들이 삭갈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수묘인연호에 대한 규정이 제정된 후 약 700년이 흐르면서 점차 문란해져 수묘인연호들은 자기들이 맡은 왕릉이 어느것인지 잘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였다는것 을 보여준다.

수묘인연호에 대한 법은 광개토왕, 장수왕시기에 한층 강화되였다.

광개토왕은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력대 왕릉들가운데서 가장 크게 건설하고 문란된 수묘인연호에 대한 법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광개토왕릉비문의 내용구성을 보면 수묘인연호에 대한 내용이 전체 글자의 40%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씌여진 모두루묘지명에서도 볼수 없는 현상이다.

고구려봉건국가는 이에만 그치지 않고 장수왕시기에는 더 강화된 수묘인연호법을 비에 새겨 공포하였다.

고구려시기 무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언제 나왔는가에 대하여서는 학계에서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릉비문에는 광개토왕이 비를 세우고 거기에 수묘인연호를 새겨서 삭갈리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는 내용만 있고 집안고구려비문에는 법을 제정하고 발령한다고 되였다.

집아고구려비의 7행에는《ㅁㅁㅁㅁㅁㅁ自戊□定律教□發令-무□년부터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내보내여 발령하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였다.

선행한 연구자들이 비의 건립년대에 대하여 많은 견해들을 제기하였는데 대체로 두 가지로 갈라진다. 하나는 광개토왕대에, 다른 하나는 장수왕대에 세웠다고 보는것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법의 발령시기인 《自戊□》라는 간지년대를 무자(388), 무신(408), 무오(418)중의 하나로 보고 무자년은 광개토왕의 아버지인 고국양왕이 죽기 전이므로 너무 이르고 무오년은 장수왕 6년으로서 이미 광개토왕의 무덤에 비를 세운 다음이여서 너무 늦다고 보면서 광개토왕이 살아있을 때인 무신(408)년이 제일 합당하다고 하였다.*

* 《사회과학전선》(중문) 문물출판사 2013년 5호 10~11폐지

이것은 수묘인연호와 관련한 지시를 내린 시기가 광개토왕이 한창 활동하던 때이고 그후 인차 비를 세웠다고 보는데로부터 출발한 견해이다.

새법을 정하고 발령한 년대가 광개토왕이 살아있을 때인가 아니면 죽은 다음인가 하는것은 비문의 내용을 따져보면 알수 있다.

내용상에서 보면 이 비문의 법조항이 광개토왕릉비의 내용에 비하여 더 세분화되고 발전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릉비건립시기보다 후에 새법을 정하고 발령하면서 새 비석을 세웠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년대는 무오(418)년이나 무진(428)년이 될수 있는데 무진년은 평양천도이후이므로 너무 늦다. 그러므로 집안고구려비를 세운 년대는 무오(418)년으로 보는것이 순조롭겠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규정을 보면 무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선 무덤의 관리와 관련한 법조항이 광개토왕릉비의 내용에 비하여 더 세분화되고 가혹해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광개토왕릉비문에서는 팔고사는자들본인에 한하여 벌을 적용한다고 되여있지만 집안 고구려비문에는 후세에 이어가면서 죄를 준다고 하였다. 광개토왕릉비문에는 《이제부터 다시 수묘인연호들을 팔고살수 없다. 비록 부유한자들이라고 하여도 팔고살수 없으며 그 것을 어기는자들은 판자는 형벌을 가하고 산자는 수묘인으로 만든다.》고 되였다.

그러나 집안고구려비에는 《守墓之民不得擅自更相轉賣雖富足之者 亦不得其買賣 如有違令者 後世□嗣□□看其碑文与其罪過 — 지금부터 수묘백성들을 다시 제멋대로 서로 팔수 없다. 비록 부유한자들이라고 하여도 그들을 사고팔수 없다. 만약 법을 어기는자가 있으면 후세에 이어가면서 이 비문을 보고 죄를 주라.》고 되여있다.

이것을 단순히 집안고구려비가 광개토왕릉비문에서 빼놓은것을 보충하였다고 볼수는 없다. 법조항내용을 쓸 면적으로 말하면 광개토왕릉비가 훨씬 더 크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광개토왕대에는 본인에게만 해당되던 벌이 점차 더 가혹해져서 후손들에게까지 넘어가는 방향으로 강화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무덤관리자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묘인연호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개선하려는 경향도 엿보인다.

릉비문에는 무덤관리자들을 수묘인연호라고만 표현하였다.

그러나 집안고구려비문에는 연호라는 표현과 함께 수묘민, 수묘자 등으로 일반백성들에 대한 명칭처럼 다양해졌다. 이것은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 즉 수묘인연호를 보존하기 위한 론의가 분분해지면서 그에 대한 호칭도 매매를 할수 없는 평민처럼 느껴지게 하려는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무덤관리자들을 팔고사는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비문작성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본다.

광개토왕릉비문에는 수묘인연호를 국연과 간연으로만 나누고 국연 30호에 간연 300호 가 배속되다고만 하였다.

수묘인연호를 파는 행위를 한자들은 그들을 관리하던자들 즉 국연 또는 우두머리들 이였을것이다. 릉비문에서는 국연 또는 우두머리의 수자만 밝히고 그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수묘인연호를 판자들을 처벌하는데 일정한 빈틈이 있었다. 그러나 집안고구려비문에서는 연호우두머리 20호의 이름을 다 밝히라고 하였으므로 당대에는 물론 후세에 가서도 팔아넘긴자들과 그 후손들을 쉽게 찾아내서 처벌할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고구려가 존재하는 기간 계속 존재하였을것이다. 그것은 고구려시기 조상들의 무덤을 잘 돌보는 사업이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한 일이였기때문이다. 물론 평양천도이후 고구려의 무덤구조와 릉원구성이 달라지고 전반적으로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였던것만큼 수묘인연호에 대한 규정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을것이다.

2. 2. 무덤관리로력

고구려시기의 무덤은 구조형식이나 구성상태의 특성으로 하여 많은 품을 들여서 정 상적으로 유지공사를 해야 하였다.

방대한 릉원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정상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기의 체모를 유지할수 없었다.

왕을 비롯한 고위급통치배들은 많은 품이 드는 무덤관리에 전문적인 수묘인연호들을 징발배치하는 제도를 세웠다.

우선 왕을 비롯한 고위급통치배들의 무덤에 배속되는 수묘인연호는 왕의 지시에 따라 징발되였다.

《삼국사기》에는《十五年秋九月國相答夫卒年百十三歲。王自臨罷朝七日。乃以禮葬於質山置守墓二十家 -15년(179년) 가을 9월에 국상 답부가 죽으니 나이가 113살이였다. 왕이 직접 가서 조상하고 조회를 7일간 중지하였으며 이에 례를 갖추어 질산에 장사지내고 20가의 수묘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권제16 고구려본기 제4 신대왕 15년

광개토왕릉비문에는 시조왕을 비롯한 선대왕들이 다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을 징발하여 수묘인연호로 썼고 광개토왕은 자기 무덤을 관리하기 위한 수묘인연 호의 출신지와 수량을 직접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왕을 비롯한 고위급통치배들의 무덤에 배속될 수묘인연호들은 왕명에 의하여 징발배치하는 제도가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시기에는 수묘인연호 의 수량과 관련한 규정도 있었다고 본다.

명림답부의 무덤에 대한 수묘인연호배치기록은 당시 고위급통치배들의 무덤들에 대한 수묘인연호배치규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국상은 당시 고구려에서 왕 다음가는 고위급통치배인데 례(규정)에 따라서 배치한 수묘인연호가 20가정도였다는것은 곧 왕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정도를 넘을수 없었다는것 을 의미한다. 광개토왕은 자기의 무덤에 모두 330가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수묘인연호로 두게 하였는데 국연 1가는 10가의 간연을 거느리게 되여있었다.

집안고구려비에는 국연으로 볼수 있는 우두머리의 수를 20가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놓고보면 집안고구려비에서 규정한 고구려왕릉의 수묘인연호는 220가로 추산할수 있다.

물론 이것은 총 330가에 달하는 광개토왕릉의 수묘인연호에 비하면 110가가 적은 수자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할수 있다.

광개토왕릉비문에는 《조선왕들은 다만 멀고 가까운 곳의 오랜 백성들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고 청소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내가 죽은 후에 무덤을 지킬자는 다만 내가 직접 돌아다니며 붙잡아온 한, 예들만을 데려다가 청소를 시키도록 준비하게 하라. 그들이법을 모를것을 우려하여 다시 오랜 백성 110가를 취하였으니 새롭고 오랜 백성의 묘지기호수를 합하여 국연이 30, 간연이 300 도합 330가이다.》고 기록되였다.

이것은 광개토왕이 처음에 이전처럼 본토민으로 수묘인연호를 구성하면 그들이 쇠약 해지는것을 고려하여 한, 예출신들로만으로 220가를 지정하였다가 그들이 무덤관리방법 을 모를것을 걱정하면서 본토민 110가를 보충하여 지휘하게 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놓고보면 고구려시기 왕릉의 수묘인연호는 220가로 규정되여있었다고 생각할수 있다.

그밖의 무덤들에 대한 수묘인연호의 수자는 자료의 부족으로 론하기 어렵지만 대체 로는 무덤주인공의 신분의 높이에 따라 규정되었을것이다.

수묘인연호는 무덤을 건설한 다음 전국각지에서 징발하여왔다.

수묘인연호징발은 각 지방들에 국연과 간연이 몇가씩이라는 지표를 주면 해당 지방 관청들에게 그 수자에 맞게 자체로 징발하여 충당하였다고 본다.

광개토왕릉비문에는 《···수묘인연호로서는 매구여민은 국연이 둘이고 간연이 셋이며 동해고는 국연이 셋이고 간연이 다섯이며 돈성민은 네가가 다 간연이고 오성은 한가가 간연이며 비리성은 두가가 국연이다. 평양성민은 국연이 하나이고 간연이 열이며 자련은 두가가 간연이고 배루인은 국연이 하나, 간연이 마흔셋이며 량곡은 두가가 간연이고 량 성은 두가가 간연이며 안부런은 스물두가가 간연이고 개곡은 세가가 간연이며 신성은 세 가가 간연이고 남소성은 한가가 국연이다.

새로 온 한, 예로서는 사수성은 국연이 하나, 간연이 하나이고 모루성은 두가가 간연이며 두비압잠한은 다섯가가 간연이고 구모객두는 두가가 간연이며 구저한은 한가가 간연이고 사조성 한, 예는 국연이 셋이고 간연이 스물하나이며 고수야라성은 한가가 간연이고 아차성, 잡진성은 합해서 열가가 간연이며 파노성한은 아홉가가 간연이고 구모로성은 네가가 간연이고 각모로성은 두가가 간연이며 모수성은 세가가 간연이고 간저리성은 국연이 둘이고 간연이 셋이며 미추성은 국연이 하나, 간연이 일곱이다.》라고 기록되였다.

이것은 수묘인연호의 징발지역이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각지이며 중앙에서는 지표만 주고 지방에서는 그에 따라 자체로 징발하였다고 볼수 있게 하여준다.

무덤을 관리하는 로력자의 구체적인 수자에 대하여서도 추산해볼수 있다.

당시 한가당 인원수 특히는 로력자수가 얼마인가를 알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좀 이후시기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신라장적》 잔본에는 816년경에 서원경(청주)부근에 있던 4개의 촌인구수가 밝혀져있다.

그에 의하면 이 4개 촌의 총가수는 44개이며 국가적인 부역대상으로 될수 있는 정과 정녀(20~59살)는 242명(노비 19명 제외)이고 국가적인 중요공사때에만 모집하는 조자와 조녀자 $(16\sim194)$ 의 수까지 합하면 291명(노비 4명 제외)이다. 이것은 당시 한가당 로력자수가 $5\sim7$ 명정도로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단대사》신라사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0(2011)년 48폐지

이러한 자료들에 기초하면 고구려왕릉의 수묘인연호를 보통 220가로 볼 때 로력자수는 1 100~1 540명정도이고 태왕릉은 수묘인연호가 330가이므로 그에 포함되여있는 로력자수는 1700~2100명정도로 계산된다.

이렇게 놓고보면 명림답부무덤의 수묘인연호 20가에 들어있는 로력자수도 계산할수 있는데 대체로 100~130명정도로 생각된다.

수묘인연호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세습적으로 이어졌다. 광개토왕이 오랜 백성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될가봐 우려하는 내용, 집안고구려비의 4행에 《그러나 (기간)이 오래 계속되고 연호가 지키는 … 연호가 (용렬해지고 몹시 쇠약해져서)*(〈연호〉다음에 보이지 않는 4글자중 2, 3, 4번째 글자를 〈劣甚衰〉로 보는 견해가 있음.)》라는 대목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당대에 한한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진행되였다고 볼수 있다.

*《제9회 종합연구기구연구성과보고회》(일문) 164폐지

수묘인연호에 대한 로력관리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약화되였다.

무덤을 관리하는 역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던것은 틀림없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끝없는 수묘역을 맡아하는 과정에 연호들의 생활은 점차 령락되여 마지막에는 자체를 보존할수도 없게 되였다. 이것을 악용하여 통치배들은 수묘인연호들을 부유한자들에게 팔아버리고 그자들은 또 다른 곳에 되팔아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처음에 평민들이였던 수묘인연호들이 마지막에는 노비와 같은 운명에 처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수묘인연호들자체도 다른 곳에 팔려가서라도 어려운 무덤관리고역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던것 같다.

수묘인연호들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당시 통치배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식되여 광 개토왕은 고구려본토의 사람들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상태가 어려워지는것을 전제로 하 였고 집안고구려비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되였다는것을 숨기지 않았던것이다.

4세기 말경에 이르러서는 통치배들이 수묘인연호를 사고파는 현상이 더는 묵과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개토왕을 비롯한 고구려의 왕들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단순히 매매를 금지하며 그것을 어기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한다는 법을 제정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로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을뿐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크게 은을 내지 못하자 장수왕시기에는 매 무덤에 세운 비에 수묘인연호우두머리들의 이름과 그들의 구성까지 새겨넣음으로써 수묘인연호들의 류동을 막고 그것을 어기는자들을 후대들에까지 따라가서 처벌할데 대한 법을 제정발포하면서 관리로력을 보존하려고 하였다.

고구려시기 수묘인연호들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연하게 서있었다.

매 무덤에 배속된 수묘인연호들은 일반연호들과 우두머리들로 이루어졌다. 새로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에 의하면 모든 왕릉의 우두머리들은 20명인데 그아래에 일정한 량의일반연호가 있은것으로 볼수 있다.

집안고구려비의 8행에는 《…立碑銘其烟户頭廿人名》라고 되여있는데 《頭》는 우두머리를 가리키는것으로 인정된다.

광개토왕릉비문을 보아도 그의 무덤에 배속된 수묘인연호들가운데서 국연 30가에 간연 300가가 배속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국연과 간연의 비률이 1:10이였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 여기서 국연은 간연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고 우두머리들은 곧 국연이였다고 생각된다.

20명의 우두머리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분야의 사명을 수행하는 6명정도의 우두머리들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집안고구려비의 뒤면 중간에서 《□□國烟□守墓烟户合卄家石工四烟户頭六人》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은 실지 작업을 해야 할 분야가 6가지이고 그중의하나가 석공작업이며 거기에 4명이 배당되였다고 볼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매 무덤의 수묘인연호는 일정한 중앙관청에 소속되여있었을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력대 왕릉들과 고위급통치배들의 무덤들에 대한 관리를 수묘인연호들에게만 맡길수는 없 으며 반드시 국가관청이 관할하여야 하였기때문이다.

실례로 동천왕시기 무당을 통하여 전달된 고국천왕(국양왕)의 말에 의하면 왕비 우씨의 무덤위치문제를 두고 그와 싸웠는데 조정에 고하여 자기의 무덤을 무엇으로 가리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무덤에 소나무를 일곱겹으로 심었다고 한다.

이것은 무덤에 식수를 더 하는 공사정도도 조정의 지시에 의하여 진행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왕릉급무덤의 관리에 대한 지휘는 조정 즉 중앙관청에서 맡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국사기》에는 《冬十月怪由卒…王善其言又以有大功勞葬於 北溟山陽命有司以時祀之 -겨울 10월에 괴유가 죽었다. …왕은 그의 말이 듣기 좋고 또 큰 공로가 있으므로 북명 산 남쪽에 장사지내고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때에 맞추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라는 자료가 있다.*

*《삼국사기》권제14 고구려본기 제2 대무신왕 5년

이것 역시 무덤을 관리하면서 때에 맞추어 제사를 지내는 관청과 관리가 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고구려시기에는 수묘인연호의 복역규정도 정연하게 서있었다.

명림답부무덤의 수묘인연호는 20가인데 이 정도이면 무덤주변에서 직접 관리를 진행할수 있다.

태왕릉과 같이 큰 무덤인 경우에는 정상관리에 많은 품이 들었을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330가(1700~2100명정도)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수묘인연호로 두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당시 《국강상》이라고 부르는 언덕우에 모두 모여살게 할수는 없었을것이다. 고구려수도 국내성일대는 인구도 많았고 무덤도 많았으며(1만 수천기) 경작지는 얼마 없었다. 그러므로 330가 전체가 한곳에 모여살게 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였고 수묘인연호들의 일부 례컨대 국연층이나 일부 간연층에서 선발된자들만을실제 립역자로 하였을것이다. 고려때 기인들이 10~15년씩 수도에 가서 근무한것처럼*국연 30가정도가 《국강상》에 모여살게 하였다고 생각해볼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국연은복무기간이 길뿐이지 크게 볼 때에는 역시 《선상립역》을 하는것이다. 국연이 만일 《국강상》에 이주하여 영원히 고착되여 사는 존재라면 지방고을들에서 그들에 대하여 책임질수 없었을것이다.*

*《고려사》권75 서거지3 기인

그러면 국연, 간연의 수묘역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였겠는가.

여기에서 우선 고려하여야 할 점은 수묘역이 봉건시대에 무거운 신역이였다는 사실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수릉군호(릉호)는 대체로 량인신분의 농민가호였으며 릉묘당수릉군, 수묘군의 호수는 상당히 많았다. 례컨대 건원릉(태조묘)은 100가였고 보통 선왕, 선후(제사대상이 되는 죽은 왕, 왕후)의 묘는 수릉군이 각각 70명씩이였다.

수릉군, 수묘군은 신역이 가장 무거운자들의 하나로 간주되고있었으며 그 보상으로 1호당 2결의 자경무세전을 받게 되여있었고 일체 요역(강제로동)에서 면제되였다. 그들은 호당 토지 4~5결이하, 식구장정(남자) 5명이하인 경우에는 이러한 《복호》의 《혜택》을 받는것으로 되여있었다.*

* 《경국대전》 호전, 제전, 병전, 복호조

수묘역이 무거운 신역이였던것만큼 국연 30가, 간연 300가가 국연 1가, 간연 10가계 11가를 1개 립역단위로 하여 모두 30개 단위로 편성되였다고 일단 생각하는것은 무리가 아닐것이다.

수묘인연호는 그 립역의 구체적방식은 잘 알수 없어도 각 지역단위와 련결되여있는 점으로 보아 어떤 형식으로든지 몇달씩 상번(교대근무)하거나 1년 또는 몇년씩 장번(장기 근무)하는 방법으로 립역하고 그뒤를 대여주는 《자보》를 가지고있은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후세봉건국가들에서 수릉, 수묘군이 립역하던것과 공통성을 가지고있었다.

고구려시기 수묘인연호의 신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론의가 있다.

일부 외부의 학계에서는 수묘인연호가 매매되고 전쟁과정에 끌려온 사람들이라는것을 중시하고 그들의 신분이 노비가 아니였겠는가 하는 견해들이 제기되였다.

연호들은 원래 고구려의 주민들로 이루어졌다. 광개토왕릉의 경우는 정벌과정에 데려온 사람들이 위주로 되였는데 그들의 원래신분은 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이하였다. 그러므로 수묘인연호들의 원래신분은 노비들이 아니였다. 고구려에서 수묘인연호들을 취급하는것을 보아도 사고파는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노비와는 다른 신분이였다는것을 의미한다. 특히 집안고구려비에는 수묘인연호를 《수묘민》이라고도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신분이 《민》 즉 평민이였다는것을 의미한다.*

* 《사회과학전선》(중문) 2013년 5호 8~9페지

2. 3. 관리자금

고구려시기 무덤의 관리에 들어가는 자금도 적지 않은 량이였다.

무덤의 대규모적인 개건과 보수는 자재와 자금이 많이 드는 방대한 공사였다. 당시 대규모적인 무덤개건보수를 제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공사들에 필요한 자 금은 대체로가 수묘인연호들이 부담하였다고 본다.

앞에서도 본바와 같이 많은 수의 수묘인연호들은 수도의 무덤주변이 아니라 각지방에 있으면서 무덤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였을것이다. 이들도 각기 국가로부터 받은 자기의 땅이 있었으며 여기에서 나는 수확물은 국가에 바치는 조세에서는 면제되고 수도에서 직접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보냈을것이다. 이 량이 구체적으로 얼마인가는 여러가지로 추산해볼수 있다.

《수서》에는 고구려에서 전세로서 매 사람(장정)당 베 5필과 곡식 5섬을 바친다고 하였다.

고구려왕릉의 수묘인연호는 보통 220가로 볼 때 로력자수는 1 100~1 540명정도인데 수도에서 수묘역을 지고있는 20가를 제외하면 실지 지방에서 천과 곡식을 낼수 있는 호수는 200가이다. 그러므로 천과 곡식의 량은 5 000~7 000(필, 섬)이라는 수자로 계산된다.

또한 태왕릉은 수묘인연호가 330가인데 국연 30가를 제외하면 지방의 로력자수는 $1500\sim2100$ 명정도이며 천과 곡식은 $7500\sim10500(필, 점)으로 계산된다.$

무덤관리에 들어가는 곡식의 량은 수묘인연호들이 소유하였던 토지의 량으로도 추산하여볼수 있다. 《신라장적》 잔본에는 4개의 촌에 호수는 44호이고 거기에 있는 토지는 564결로서 호당 평균 12.8결에 해당한다.

고구려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광개토왕릉의 경우에는 수도에 있는 30가를 제외하고 지방에 있는 300가가 가지고있는 토지는 3 840결이 된다. 이것은 좀 많은 편이고 일반왕릉들의 경우는 2560결정도로 계산할수 있다.

이 정도의 토지에서 얼마만한 곡식을 받아낼수 있는가를 따져볼수 있다. 후세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발해초기의 전세제도를 반영한 《협계태씨족보》(발해국왕세략사)에는 대조영이 699년 처음으로 전세를 제정하면서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나라의 명이 길고짧은것은 민생의 고락에 달려있으며 민생의 고락은 전세의 균등여부에 달려있다. 오늘부터반드시 10분의 1세제를 실시하여 밭 1부에서 곡식 3되를 (조세로서)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토지 100부가 1결이므로 1결에서 나오는 조세는 30말로서 2섬에 해당한다. 그리므로 당시 1결당 나오는 곡식의 량은 2섬정도였다.*

*《발해사연구론문집》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86(1997)년 96~98폐지

대조영은 고구려의 옛 장수이므로 고구려시기의 조세제도를 잘 알고있었을것이며 그 것을 많이 참작하였을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고구려의 일반왕릉관리에 수묘인연호들이 낼수 있는 곡식의 량은 5120섬이고 광개토왕의 릉은 7680섬이다.

우에서 본 《수서》와 《협계태씨족보》의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한 수자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것은 고구려와 신라, 발해에서 호당 토지소유량에서 큰 차이가 없었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수서》나 《협계태씨족보》의 자료는 당시 고구려봉건국가가 《리상》으로 내세웠던 10분의 1를 의미하는것이고 실지는 통치배들이 농민들의 생산물을 갖은 구실을 다 붙여 빼앗아갔을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기 건국초기에는 10분의 1세로 하고는 일정한 세월이 지난 다음인 10세기말에는 4분의 1세로 착취량을 늘였다.

특히 수묘인연호는 국가적인 조세제도가 아니라 무덤관리를 책임진 통치배들의 착취 대상이였으므로 수탈정도가 더욱 혹심하였을것이다.

당시의 금석문들에 수묘인연호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다고 기록되였는데 실지로 그들은 처음에는 보통농민들이였지만 끝없는 착취로 마지막에는 몹시 가난해져서 노비처럼 팔리우는 처지에 이르렀다.

무덤을 이루는 건축구조물의 보수관리는 더 말할것도 없고 각종 제사에도 많은 비용이 들었다. 이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였는지도 대략 추측할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에서 779년 김유신의 무덤에서 《불길》한 일이 생겨났다고 하자그의 명복을 비는 비용으로 쓰라고 추선사에 30결의 토지를 따로 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삼국사기》권제43 렬전제3 김유신 하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는 허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452년에 김질왕이 왕후사를 세우고 그 근처의 평전 10결을 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가야는 령토도 작고 국력도 약하므로 허황후를 위하여 지은 절간의 규모도 작고 거기에 줄수 있는 토지의 량도 많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상대적으로 령토가 크므로 보다 많은 토지를 주었을것이다.

고구려의 시조왕인 동명왕릉에도 고주몽을 제사지내는 절간인 정릉사가 있었는데 그 규모가 매우 크다. 당시 고구려는 가야나 신라와 대비할수 없이 큰 령토와 국력을 가졌 기때문에 여기에 배속된 토지는 훨씬 더 많았을것으로 생각된다.

무덤관리의 비용은 《공로》를 세우고 죽은 개별적인 통치배들의 처들에게 주는 쌀로 도 충당되였을것이다.

김유신의 처에게 주었다는 벼 1 000섬, 강수의 처에게 주었다는 벼 100섬 등이 본인 들의 살림살이에 리용되면서도 남편들의 무덤관리비용으로도 쓰이였을것이다.

이밖에도 후손들이 가족적인 범위에서 마련한 자금들도 선조의 무덤을 관리하는데 일정한 규모에서 리용되였을것이다.

2. 4. 관리항목

고구려시기 무덤관리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수묘인연호들은 우선 무덤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고구려시기 조상의 무덤은 매우 신성시되였으므로 무덤의 방대한 봉분과 부속건물들, 시설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수하는 공사와 릉원의 식수사업 등이 경우에 따라 소규모적 으로 또는 대규모적으로 진행되여야 하였다.

실례로 돌각담무덤인 경우에는 봄과 가을에 돌구조물이 변형되거나 무너지는 손상을 바로잡아야 하며 여름에는 돌짬에 돋아나는 잡풀을 제거하는 일을 하여야 할것이였다. 또한 봉분우에 건설한 건물의 목조구조와 기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도 정상적으로 진 행하여야 하였다. 또한 무덤주변의 넓은 면적을 덮은 돌포장시설에 쌓이는 흙먼지와 잡 풀을 제거하는 작업도 제기되였다. 그리고 무덤의 둘레에 쌓은 담장의 보수, 토성안에 세 운 제당건물의 보수 등이 있었을것이였다.

그런가 하면 돌칸흙무덤인 동명왕릉의 관리는 봉분이 흙이므로 돌각담무덤에서와 같은 잡다한 공사는 훨씬 적어졌을것이다. 다만 봉분의 흙이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잔디를 입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을것이다. 이와 함께 무덤앞에 건설되였던 정릉사건물에 대한 보수관리사업이 있었고 주변의 달린 무덤, 진주못에 대한 관리 등이 진행되였다고 본다.

당시에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무덤들을 대규모적으로 보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와 수도를 비롯한 성들을 함락하는 경우에는 력대 무덤들에 대한 대대적인 파괴를 감행하였기때문이다.

그러한 실례로 246년 고구려에 침입하였던 위나라의 관구검이 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것을 주장한 득래의 무덤만은 헐지 말라고 한 사실과 296년 모용선비족추장

모용외가 고국원으로 침입하여 서천왕의 무덤을 파헤치다가 도굴자들가운데 죽는자가 생기고 무덤안에서 음악소리가 나자 귀신이 있는가 겁이 나서 달아났다고 한것을 들수 있다.

342년 연나라 모용황은 고구려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미천왕의 릉을 파헤치고 시체를 싣고 달아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삼국사기》권제18 고구려본기 제6 고국원왕 12년

이러한 자료들은 외래침략자들의 발굽이 미친 곳마다에서 무덤의 파괴상이 어떠하였 겠는가를 충분히 상상할수 있다. 이때마다 각 무덤에 배속된 수묘인연호들은 힘겨운 복 구공사를 진행하였을것이다.

물론 이처럼 대규모적인 공사를 수묘인연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으므로 왕릉들의 개축에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로력을 동원하였을것이다. 백제의 개로왕이 왕릉개축공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중한 공사를 벌려놓아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온 나라가 매우 위태로와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동원된 로력의 범위를 알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통치배들인 경우는 수묘인연호들과 가문적으로 마련한 로력으로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보아진다.

고구려시기에는 무덤을 축조하고 그 주변에 릉원을 꾸리면서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 풍습이 있었는데 필요에 따라 무덤을 관리하는 과정에도 보충적으로 식수를 하였다. 《삼국사기》에 국양왕이 자기의 처 우씨가 후남편인 산상왕의 무덤옆에 배장되는것을 보고 나라사람들을 보기가 부끄러워 그러니 릉앞을 무엇으로 가리우게 해달라고 하자 소나무를 일곱겹으로 심었다는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수묘인연호들은 또한 무덤을 지키는 경비임무도 수행하였다. 특히 돌각담무덤안에 많은 금은재보를 껴묻었으므로 무덤은 도굴자들의 침해대상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수묘 인연호는 여러가지 공사들과 함께 무덤을 지키는 임무도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수묘인연호는 무덤에 대한 제사도 맡아서 진행하였다. 원래 개별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사를 가족들과 후손들이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였겠지만 왕을 비롯한 고 위급의 통치배들은 이러한 일도 많은 몫을 수묘인연호들에게 들씌웠다고 보인다.

집안고구려비에 수묘인연호의 임무를《···各墓烟户以此河流四時祭祀-···각 무덤의 연호는 이 강역에서 4시절 제사를 지낸다.》라고 쪼아박은것과 고위급의 통치배인 괴유가죽자 왕이 북명산 남쪽에 장사지내고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때에 맞추어 제사를 지내게하였다는것을 보면 제사가 그들의 매우 중요한 임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당시 고위급통치배들이 진행하는 제사는 일반사람들처럼 간단히 제상이나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제물을 마련하고 그것을 운반하며 처리하는 등 적지 않은 품이 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그 무덤에 배속된 수묘인연호들에게 맡겨진 고역중의 한 부분이였을것이다.

무덤에 대한 제사자료는 《삼국사기》에 고위급통치배였던 피유를 장사지내고 때에 맞추어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時)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잘 알수 없으나 집안고구려비에는 《四時祭祀》라고 되여있다. 이 4시는 4계절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것이다. 이것은 고구려시기 왕급의 통치배들의무덤제사가 《시제》형식으로 진행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다른 날에도 진행되였겠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알수 없다.

수묘인연호의 이러한 임무는 4세기경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굳어진 규정으로 되여있 었다. 집안고구려비의 앞부분에 고구려왕조의 신성함을 강조한 후에 수묘인연호의 임무를 밝히고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제도가 문란되였다고 하면서 광개토왕이 수묘인 연호제도가 문란된것을 가슴아파하며 새로운 대책을 세웠다고 하였다.

무덤관리내용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광개토왕이후 수묘인연호제도가 더 강화되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것 같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수묘인연호에 대한 법규정을 선포한집안고구려비에도 매매금지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을뿐 다른 내용은 보충되지 않았기때문이다.

2. 5. 고구려무덤관리의 특징

고구려시기 무덤의 관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특징은 첫째로, 당시 고구려의 토착신앙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우선 고구려시기에는 시조왕숭배를 비롯한 조상숭배신앙이 매우 강하게 존재하였다. 4세기 왕을 비롯한 고위급통치배들의 묘지명들에 시조왕의 공적이 먼저 올라있는 현상, 큰 성들에는 다 동명왕과 그의 어머니를 제사지내는 사당들이 존재한 사실 등은 고구려시기 시조왕을 비롯한 조상숭배가 매우 중요한 신앙으로 존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상숭배신앙은 고구려사람들로 하여금 시조왕릉을 비롯한 조상들의 무덤을 잘 관리하는 사업을 특별히 중시하게 하였다.

또한 고구려시기에는 조상의 무덤을 피장자와 그 후손들의 권세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기는 의식이 특별히 강하게 존재하였다.

백제에 거짓망명하였던 고구려의 중 도림이 개로왕에게 왕은 만백성이 우리러보는 바가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부왕의 무덤을 크게 개건하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그러한 관념이 백제사람들에 비하여 고구려사람들속에서 훨씬 더 강하게 존재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천추무덤에서 발견된 벽돌에 새겨진 《보고건곤상화(保固乾坤相華)》라는 글은 무덤을 굳건하게 보존하면 하늘과 땅 혹은 음과 양이 서로 빛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당시 고구려에서는 음양오행설이 중요한 정치철학으로 되고있었으므로 하늘과 땅, 음과 양이 서로 빛난다는것은 모든 일이 잘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무덤을 잘 관리하면 후대들이 번영하게 된다는 관념이 확고히 존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시기에는 또한 무덤을 피장자의 령혼이 영원히 살 장소로 간주하는 의식이 특별히 강하게 존재하였다.

고대와 중세초기사람들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령혼불멸관념이 지배적으로 존재하였다. 령혼불멸관념은 사람의 육체는 죽어도 령혼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보면서 죽은 사람의 령 혼이 무덤안에서 살아있을 때와 같은 생활을 누린다는 비과학적인 견해이다.

당시 고구려사람들속에서는 령혼불멸관념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지배하고있었다. 고구려 산상왕비 우씨는 유언에서 자기가 죽으면 지하에서 전 남편이였던 고국천왕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고 무당에게 현신한 고국천왕은 자기가 어제 우씨가 산상왕에게 가는것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한바탕 싸웠고 (무덤에) 돌아와 생각하니 부끄러워나라사람들을 대할수가 없다고 하소연하였다.

덕흥리벽화무덤의 묵서 마지막부분에 있는 《(이 무덤에 깃든 령혼이) 후세토록 무궁하라.》는 기록이 있다.*

*《덕흥리벽화무덤》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년 26폐지

구조상에서 보아도 대규모돌각담무덤우에 량면경사식의 목조건물지붕을 설치하고 그 우에 기와를 씌운것, 천추무덤과 태왕릉에서와 같이 돌로 집모양의 곽을 만들고 그안에 관들을 안치한것 등은 무덤을 살림집과 같이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지게 한 다. 당시 이러한 무덤구조는 고구려에서만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와 이웃하였던 모용선비인들도 고구려사람들의 무덤에 대한 이러한 관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있었다. 봉상왕시기 고구려에 침입하였던 모용선비침략자들은 서천왕의 무덤을 도굴하다가 갑자기 죽는자가 생기고 무덤안에서 음악소리같은것이 나자 그안에 귀신이 있다고 판단하고 도망친 일이 있었다.*

*《삼국사기》권제17 고구려본기 제5 봉상왕 5년

고구려사람들이 지녔던 이와 같은 토착신앙들은 조상의 무덤을 잘 건설하고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수 있게 한 바탕으로 되였다.

특징은 둘째로, 자기 나라와 가문의 위업이 영원무궁하게 번영하리라는것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시위하려는데 목적을 둔 무덤관리였다는것이다.

우선 고구려사람들은 무덤의 관리를 천년, 만년동안 계속 잘 진행하려고 하였다.

집안의 천추무덤에서는 《천추만세영고(千秋萬歲永固)》라는 글이 새겨진 벽돌이 많이나왔다. 《천추만세영고(千秋萬歲永固)》는 무덤이 천년만년 영원히 굳건하라는 의미이다.

무덤의 관리는 나라나 가문이 존재하고 번영하는 기간에만 진행할수 있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나라가 망하여 외래침략자들에게 강점되면 조상의 무덤도 안전할수 없다는것은 지나온 력사는 물론 고구려봉건국가가 존재하던 시기에도 뼈저리게 느낄수 있었던 진리였다. 고구려사람들이 무덤을 몇백년정도가 아니라 천년, 만년동안 갈수 있게 튼튼히 건설하고 굳건히 관리하려고 하였다는것은 곧 자기 나라의 존재와 번영기간을 그정도로 믿고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고구려사람들은 또한 무덤을 산과 메부리처럼 오래동안 안전하고 굳건하게 관리할것을 념원하였다.

태왕릉에서는《원태왕릉안여산고여악(愿太王陵安如山固如岳)》이라는 글이 새겨진 벽돌들이 많이 발견되였다.

《원태왕릉안여산고여악(愿太王陵安如山固如岳)》이라는 글은 태왕릉이 산과 같이 안전하고 메부리와 같이 굳건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산이나 메부리처럼 안전하고 굳건한것 역시 영원불멸의 상징의 하나로 인식할수 있다. 산이나 메부리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안전하고 굳건하게 존재하는 직관적인 상징물이다.

고구려사람들은 해와 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인 동명왕이 창건한 자기들의 나라 가 하늘의 도움을 받아 천년, 만년동안 영원히 존재할것이라고 굳게 믿고있었고 그것을 내외에 선전하였을것이며 따라서 무덤의 관리기간도 그렇게 제정하였던것이다.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지니고있던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와 자신심을 엿볼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실지에 있어서 고구려사람들은 조상의 무덤을 매우 오래동안 잘 관리하였다.

특징은 셋째로, 수도와 주요도시의 원림화와 토지보호에 좋은 환경을 마련해준 무덤 관리였다는것이다.

고구려시기 무덤은 수도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의 내부와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여 있었다. 일반적으로 무덤을 건설할 때에는 주변의 넓은 지대를 정리하고 돌이나 흙으로 커다란 봉분을 쌓아올렸으므로 수십~수천기의 무덤들이 집중된 무덤뗴지구는 무덤무지 들만이 우중충하게 보이게 된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인과 집안, 평양의 도시구획내부에 많은 무덤뗴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도시의 경관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무덤을 건설하고 관리하면서 소나무와 잣나무를 렬을 지어가며 심고 가꾸었으므로 무덤뗴지구가 나무들이 울창하게 줄지어 서있는 원림처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나무들은 우선 무덤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를 냈다.

왕비 우씨가 후남편에게 배장되여 나라사람들을 부끄러워 볼수 없으니 무엇으로 가리워달라고 한 고국천왕의 부탁을 무덤앞에 소나무를 7렬로 심어주었다는 이야기는 릉원안에 조성한 나무숲의 용도를 알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로 된다.

또한 비가 많이 와도 나무숲의 보호작용으로 땅이 패이거나 구조물이 무너져내리는 것과 같은 자연피해도 막을수 있어 토지보호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을것이다. 이 것은 당시 고구려의 선진적인 원림조성과 토지보호기술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3. 결 론

고구려시기 무덤의 관리문제는 단순히 무덤풍습만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를 여러 측 면에서 리해하는데서 도움을 줄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수 있다.

우선 고구려의 무덤관리가 당시 사람들이 지녔던 토착신앙과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과 긍지의 감정에 기초하였다는것을 론증하였다.

무덤은 조상숭배와 관련한 대상이지만 나라별, 시기별로 종교와 같은 외래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구려시기에는 무덤의 관리에서 외래적인 요소보다도 토착신앙의 영향이 지배적이였다. 특히 시조왕숭배와 같은 토착신앙은 고구려말기까지 기본신앙으로 존재하면서 봉건국가의 강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무덤의 관리에도 큰 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무덤관리를 천년만년동안 계속 잘 진행하려는 념원은 고구려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영구불멸설을 확고히 믿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이것은 고구려가 천년강국으로 존재할수 있게 하는데서 일정한 작용을 하였을것이다.

또한 수묘인연호법규정의 제정과 집행과정을 자세히 해명하여 고구려시기의 법규와 여러가지 제도적인 측면을 연구하는데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수묘인연호법의 제정시기와 법조항, 개정, 집행방식 등은 고구려봉건국가를 유지하였 던 여러가지 법들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것이다.

또한 무덤관리에 들어가는 인적, 물적자원에 대하여서와 고구려시기 무덤관리가 도시의 원림조성과 토지보호에 유리한 작용을 하였다는데 대하여 론의하였다. 이것은 후세에도 본받을만 한 좋은 풍습이며 당시의 원림기술과 토지보호기술을 보여주는 자료로 된다.

고구려의 무덤관리분야에서는 아직도 백제, 신라, 가야에 준 영향, 주변나라에 비한 독자성 등에 대하여 더 연구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력사사료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미해명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더욱 풍부히 고증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고구려무덤, 수묘인연호, 집안고구려비